

캠퍼스 시설 및 공간 이용 규정

제정 : 2015. 08. 07.

개정 : 2017. 03. 10.

담당 : 사무관리팀(02-950-5520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용어의 정의)	제3조(적용범위)	제4조(이용원칙)
제5조(이용신청)	제6조(이용의 우선순위)	제7조(원상복구)	제8조(조형물 설치 및 광고물의 게시 등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 교육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“캠퍼스”라 한다)의 시설 및 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캠퍼스라 함은 한국성서대학교 부지내의 모든 시설과 공간을 의미하며 주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.

1. 시설 : 강의실, 강당, 기타 실내외 공간
2. 관리부서 : 시설의 이용신청접수, 신청심사, 허가 등 이에 부대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사무관리팀을 말한다.
3. 내부이용자 : 본 대학교 조직 및 대학교에서 공식 승인한 학생자치회 및 동아리
4. 외부이용자 : 위3호를 제외한 개인, 단체 등 모든 이용자

제3조(적용범위) ① 본 규정은 수업 이외의 목적으로 본 대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적용한다.
② 캠퍼스 시설이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4조(이용원칙) ① 캠퍼스 시설 및 공간의 이용은 자유로운 학업 분위기를 유지하고, 구성원의 안전과 통행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거룩한 공간 유지를 위하여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

제5조(이용신청) ① 내부이용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부서에 공문, 협조전, 그룹웨어 쪽지 등을 통해 시설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.
② 학회 및 동아리의 경우는 [별지1호]의 신청서를 작성 후 지도(책임)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학팀에 제출,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③ 외부이용자는 사무관리팀에 [별지 2호]의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,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한다.
-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1. 교육시설,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 부근에서 스피커를 사용하는 등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 - 2. 잔디나 수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 - 3. 기타 면학 및 연구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 - 4. 외부단체가 주도하거나 외부인이 다수 참여하거나 행사나 집회

제6조(이용의 우선순위) 시설 및 공간의 이용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.

- 1. 수업을 위한 강의배정
- 2. 본 대학교가 주관하는 행사
- 3. 시설보수 및 정비계획
- 4. 유료사용자

제7조(원상복구) 캠퍼스를 집회 및 행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, 사용자는 청소 또는 정리 정돈을 통하여 캠퍼스 사용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여야 한다.

제8조(조형물 설치 및 광고물의 게시 등) ① 캠퍼스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- ② 플래카드, 포스터 등 광고물(이하 “광고물”이라 한다)의 게시는 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·부착하되, 통행에 지장이 없고 구조물 또는 수목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.
- ③ 광고물을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④ 모든 광고물의 게시 또는 부착 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. 다만 사전에 게시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.
- ⑤ 학교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치·게시된 광고물 등을 즉시 철거할 수 있다. 이 경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·게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